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 제도 도입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1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방문보육교사 제도 도입	2
2.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 명시 등	10
【참고자료 1】 맞춤형 방문서비스 관련 입법례	17
【참고자료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고 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Ⅲ. 검토의견

1.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방문보육교사 제도 도입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개별보육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담당하는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등 어린이집을 통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외에 보육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7호, 제49조의4 및 제5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u>어린이집 및 가정양육</u>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어린이집,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양육</u> ----- -----. 3. ~ 5. (현행과 같음) 6. “가정방문보육”이란 <u>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을 말한다.</u>

<u><신 설></u> ② ~ ⑧ (생 략) <u><신 설></u> 제50조(경력 인정) ①·② (생 략) <u><신 설></u>	7. “가정방문보육교사”란 영유아의 가정에서 개별보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의4(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 ①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3항,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육교사”는 “가정방문보육교사”로 본다. 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임면·배치, 그 밖에 가정방문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력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방문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	---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정이 기관이 아닌 조부모,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은 전체의 11.5%(단독이용 2.9%,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과 병행 8.5%) 수준으로, 주된 사유로는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어렵거나(66.7%), 기관이용을 원하는 대기자가 많다거나(9.8%),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하다는(7.8%) 등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가 가정양육을 할 상황이 안 되는 등의 사유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보육 형태의 공공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구분	2021년			2018년	2015년	2012년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보육대상 아동(a)	1,374	2,097	3,471	3,775	3,560	3,343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c+d)	156	242	398	614	387	1,243
비율(b/a)	(11.4)	(11.5)	(11.5)	(16.3)	(10.9)	(37.2)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96	6	102	176	86	379
비율(c/a)	(7.0)	(0.3)	(2.9)	(4.7)	(2.4)	(11.3)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이용 아동(d)	60	236	296	438	301	864
비율(d/a)	(4.4)	(11.3)	(8.5)	(11.6)	(8.5)	(25.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p. 469-472

【기관 이용 대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응 어려움	대기자 많음	여러 명을 한 사람이 돌봐 불안	비용 부담	등하원 데려다주기 어려움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마에안들	기타	계(수)
전체	66.7	9.8	7.8	1.9	1.7	1.4	0.6	10.0	(102)
영유아구분									
영아	70.7	9.1	.5	2.0	1.9	1.5	0.7	7.7	(96)
유아	19.0	19.0	24.5	-	-	-	-	37.6	(6)
연령									
0세	76.3	6.1	7.9	3.7	-	3.7	-	2.2	(42)
1세	70.2	8.4	5.3	1.2	-	-	1.5	13.4	(41)
2세	56.5	19.5	6.1	-	13.0	-	-	4.9	(13)
3세	26.3	26.3	33.9	-	-	-	-	13.5	(4)
4세	-	-	-	-	-	-	-	-	-
5세	-	-	-	-	-	-	-	100.0	(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영유아 구분은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p. 469-472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인 “가정방문보육” 제도를 도입하고, 가정방문보육을 담당하는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하여, 다양한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영유아 양육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¹⁾은 어린이집을 통한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보육”은 영유아의 가정에서 “가정방문보육교사”의 방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1) 「영유아보육법」은 ①어린이집의 설치·운영(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7장 지도 및 감독)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교육(제3장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는 “보육”²⁾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신설의 필요성, 서비스 전달체계,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와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와 학대 등이 종료된 이후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⁴⁾ <참고자료 1: 맞춤형 방문서비스 관련 입법례>

둘째, 가정방문보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⁵⁾과 ①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양육서비스로

4)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전담 지원하는 사례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양육 지원을 제공(건강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자치구를 선정해 운영)
-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존재(사회보험)

자료: 교육부

5)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일정한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양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교사가 신청 가정에 개별보육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과 유사하므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임.

셋째, 가정방문보육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인 만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영유아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가정방문보육 대상자 선정 기준, 보육과정⁶⁾의 편성 및

6)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적용, 보육 시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채용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전체 영유아의 75.4%이고('23.12월 말 기준), 시도 및 기관별로 시간제 보육, 영아전담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하며,

보육교사와 가정방문보육교사 간 근무 여건·직무 역량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자격과 경력의 인정 관련 사항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 명시 등

개정안은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이나 가정방문보육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며,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u>보육</u> 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 ----- <u>보육(제2조제6호에 따른 가정방문보육을 포함한다)</u>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어린이집이나</u>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u>지원할 수 있다</u> .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 ----- <u>어린이집이나 가정방문보육 또는</u> ----- ----- ----- ----- ----- ----- <u>지원하여야 한다</u> .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 -----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u>지원할 수 있다.</u>	----- ----- ----- <u>지원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u>대체교사를 포함한다</u>)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 -----<u>가정방문</u> <u>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u>----- ----- ----- ----- ----- ----- -----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7)는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 실시 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36조8)에 따라 어린이집이

7)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8)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며,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 근거를 두어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반적으로 재정지원 규정의 의무화는 국가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제 기술적 원칙이고, 현행법상 양육수당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개정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24 ~ 35개월	100천원	24 ~ 35개월	156천원	24 ~ 35개월	200천원
36 ~ 85개월	100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36 ~ 85개월	100천원
		48 ~ 85개월	100천원		

자료: 교육부

둘째, 개정안에 따라 무상보육의 범위에 가정방문보육을 포함하고, 가정방문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재정부담⁹⁾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가정방문보육의 내용,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업무 범위와 보육서비스 이용단가, 가정방문보육교사 채용 및 인건비 지급 주체·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우선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는 크게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과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어린이집)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장(80%), 보육교사(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인(100%)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음.

9)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정방문보육” 신설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신청할 영유아의 수와 보육서비스 이용단가 및 재정보조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관련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2024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월 기준)】

(단위 : 천원)

영아반(정부지원)				유아반(정부지원)				부모 부담 보육료	계
구분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계	구분	부모 보육료	누리 운영비	소계		
0세반	540	629	1,169	3세반	280	78	358	118	476
1세반	475	342	817	4세반	280	78	358	101	459
2세반	394	232	626	5세반	280	78	358	101	459

주1: 부모보육료는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수요자(보호자)에게 100% 지원하는 보육료

주2: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연령별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주3: 부모부담보육료는 보육료수납상한액(시·도지사 결정, 지역별 상이)과 부모보육료(정부 전액지원) 차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는 보육료(전액 지자체 지원중)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미지원기관은 기관보육료), 운영비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가정방문보육교사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 보육일수 및 시간, 영유아의 연령, 지급의 방법, 사후관리 등에 있어 현행 규정(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단체 의견은 다음과 같음.

【관계 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가정방문보육)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등)과 표준화된 보육과정을 개발·보급 중임
- 이에 모든 영유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보육

교사 또한 충분한 보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근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정방문보육이 시행될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의 특성 등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출발선 단계부터 평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 (양육수당 강행규정화) 현행법상 양육수당은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대상과 기준, 지급액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운영사항을 같은법 시행령과 교육부장관 고시 등에서 정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가정방문교사제도 도입 관련 - 비용인정, 자격신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미 지원기관은 기관보육료), 운영비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가정방문보육교사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 보육일수 및 시간, 영유아의 연령, 지급의 방법, 사후관리 등에 있어 현행 규정(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보육교사는 기관에 소속되어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누리과정, 연장과정 및 돌봄을 운영하는 반면, 가정방문보육교사는 영유아 개개인의 돌봄 위주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방문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직무 역량과 근무조건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특성 상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실제 근무 시간 등 근무 상황 확인도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가정방문보육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과 경력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여성가족부, 충청북도교육청】: 신중검토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일대일로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돌봄서비스로, 개정(안)의 '가정방문보육'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신중검토 필요

【인천 도립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신중검토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정방문 보육 및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안)임
-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자격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할 상황임. '가정방문보육교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함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맞춤형 방문서비스 관련 입법례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u>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u> 2. ~ 3. (생략) 4. <u>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u>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제39조의2(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u>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u>순회교육</u>”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 급학교나 의료기관, <u>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u>을 말한다.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u>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u>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u>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u>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u>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u>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암관리법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u>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u>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7. 19. 기준)

【참고자료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개요

1. 아이돌봄서비스 의미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내용

종류	대상	내용	이용시간	요금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1회 3시간 이상 정부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시간당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일반적인 돌봄활동 ※가사활동 제외), 종합형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1회 2시간 이상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내)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 제외	1회 2시간 이상 질병 완치 시까지	시간당 13,950원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기관의 장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시간당 18,600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

나.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다.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5,714,000	6,387,000	7,059,000
나형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10,218,000	11,294,000
다형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14,118,000

※ 구체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5호, 2023. 12. 31. 제정]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5~20 참고